

# 2025년 7월기 본과생까지의 학비 및 환급규정

진학코스	선고료	입학금	학비	유지비	총액
4월학기(1년)	30,000엔	50,000엔	700,000엔	20,000엔	800,000엔
4월학기(2년)			1,400,000엔	40,000엔	1,520,000엔
7월학기(1년9개월)			1,225,000엔	35,000엔	1,340,000엔
10월학기(1년6개월)			1,050,000엔	30,000엔	1,160,000엔
1월학기(1년3개월)			875,000엔	25,000엔	980,000엔
일반코스	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유지비	총액
4월/7월/10월/1월학기(1년)	30,000엔	50,000엔	700,000엔	20,000엔	800,000엔

※상기 학비는 수업료 월액 55,000엔 이외의 일본어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비, 교외 학습 등 교내 행사의 비용 (년간4학기, 계 4만엔. 1학기에1만엔) 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수업 외 활동에 따른 교통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유지비에는 손해 배상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환급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에 따릅니다:

1. 「재류 자격 인증서」 미발급 시,의 경우, 선고료를 제외한 입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2. 재외 공관에서 입국 사증(※비자)의 발급이 거부된 경우, 입학 허가서를 반환하신 후, 입국 사증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선고료를 제외한 납입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3. 사증 취득 후, 학생의 사정에 따라 입학을 사퇴하는 경우,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와 입학 허가 증명서를 반환하신 후,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4. 입학 후 입학식 전 학생의 사정에 따라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귀국 확인 후 (※귀국했다는 증명이 되는 서류 제출 필요), 선고료, 입학금, 입학 취소 수수료(※학비 1학기 분 = 175,000엔)을 제외한 납입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5. 입학 후 중퇴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귀국 확인 후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확인 후 (※귀국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재류 자격 변경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익월부터 4개월째 이후의 미수업분 수업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또한, 환급 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익월부터 세어 4개월 이후)의 기간이 학기(4월~6월, 7월~9월, 10월~12월, 1월~3월)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포함되는 경우 교재비나 교내 행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학비를 환급해 드립니다.  
※ 단, 입학부터 2 학기분 학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전염병에 따른 입원으로 공결은 인정되며, 당 월의 전 수업일이 공결로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해당 월의 수업료에서 재학 유지 수수료(1개월당 2만 엔)를 제외한 남은 수업료를 그 후의 수업료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법령 및 교칙을 위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환급에는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